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1. 6. 10.  
기획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)
- 제출일자: 2021. 5. 28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10.)

### 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초지법」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, 부패영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(안 제4조)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(안 제5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(' 20. 12. 22.) 반영
  - 개정된 법령조항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·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·대부료를 100%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32조제6항)

- 전년대비 사용료 · 대부료가 5%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에서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34조)
-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 삭제(안 제35조제2항 삭제)
-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· 대부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신설되었으나, 현행 조례는 요율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일탈 조항 삭제(안 제35조제4항 삭제)

#### ○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「초지법」 제18조에 따라 대부료 조항 신설(안 제28조제6항 신설)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(안 제30조 및 제66조)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개정으로 관련 법률조항 정비(안 제32조제1항)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6조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40조)

## 4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, 제14조제7항 및 제8항, 제16조, 제17조제7항, 제32조제2항 및 제4항, 제34조, 제35조제2항, 제50조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6조제2항
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
- 「초지법」 제18조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 ○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# ○ 기타사항

- 입법예고(2021. 4. 12.~5. 3.)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의견1건(위원의 연임 제한규정 필요: 수용)

개선의견	개정의견 반영결과	
	반영 전	반영 후
공유재산심의회 민간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규정 필요	<u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</u>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<u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)</u>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원 위촉대상 및 임기규정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며,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100% 감면 규정 신설,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,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, 초지법 제 18조에 따른 대부료 조항 신설,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,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,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 **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**

-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변경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제4조의2 「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」 조항은 달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「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있으므로 조문 정리

## **7. 심사결과: 수정가결**

## **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**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<u>제4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</u></p> <p>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</p> <p>2.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</p> <p>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</p> <p>4.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p> <p>5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·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5조의2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